

서울 소재 외국인투자기업 보조금 (고용/교육훈련) 지원 안내

- ① **근거법령** :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제4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제15조와 제16조
- ② **대상분야** : 서울시 투자유치 프로젝트, 8대 신성장동력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
IT융합, 녹색산업, 디지털콘텐츠, 비즈니스서비스, 패션디자인, 금융, 관광컨벤션, 바이오메디컬
- ③ **지원요건** : ①, ②, ③ 모두 해당되어야함
 - ① 서울 소재 외국인투자비율 30% 이상인 기업으로서,
 - ②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 또는 증액 투자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이며,
 - ③ 2018년에 신규채용으로 증가한 상시고용인원이 전년 대비 10명을 초과하는 경우
※ 신청일 현재 재직 중인 내국인을 대상으로 함

* (예시) '17년 신규채용 3명, '18년 신규채용 20명 → 전년 대비 상시고용인원 10명을 초과하는 7명에 대해 지원 가능
- ④ **지원금액**
 - ① 10명을 초과하는 신규채용인원 1인당 월 최고 10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고용보조금 지원 (18년 신설기업의 경우 신규 고용에 따른 상시 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할 것)
 - ② 위의 인원이 「직업교육훈련촉진법」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1인당 월 최고 10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교육훈련보조금 지원
 - ③ 다만, 기업당 최고지원액은 연간 4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(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각각 2억원 한도)
- ⑤ **교부에 따른 사후조건**
 - ① 보조금은 인건비 용도(급여, 상여금, 복리후생비 등)로만 사용하여야 함
 - ② 보조금 신청년도를 포함하여 3년 동안은 보조금 신청 전년도(2018년)의 상시고용인원수 및 외국인투자비율 30% 이상을 유지하여야 함
 - ③ 위의 기간 중 ①, ②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은 경우와 다른 사도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
- ⑥ **문의처** : 서울특별시 경제정책실 투자창업과

2019년 보조금 신청·접수는 서울시 홈페이지(www.seoul.go.kr), 블로그 (<http://investseoul.com>)를 참고하시기 바라며,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투자창업과 (☎02-2133-4765, sangwoon.jeong@seoul.go.kr)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